

대학 교수를 위한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대학 교수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2020년 2월 발행

발행 :  교육부

편집 :  (사)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교육부 산하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인쇄 : 늦봄기획 (02-2269-8030)



 (사)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목차

1장 예방 편	4
1. 강의를 통한 예방	
2. 학과 및 대학 차원의 예방	
2장 대응 편 (학생 상담 주요 원칙)	9
1. 학생의 의도를 파악하고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에 있어서 교수님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3. 교수님의 직책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4. 교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5. 교수님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 신고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6. 이야기를 들어주고,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7.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합니다.	
부록 관련 부서 및 기관 연락처	18



1장 예방 편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학생이나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과, 학교, 사회 차원의 문제이며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장에서는 대학교 내의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안내합니다.

1 강의를 통한 예방



가. 강의 계획서에 관련 내용 안내하기

- 강의 계획서는 학생들과 교수가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문서임
- 강의 계획서에 성희롱·성폭력은 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수업 시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교수와 학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포함할 수 있음
- 강의 계획서에 주요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수강하는 학생들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함
- 강의 관련 성희롱·성폭력의 예시
 - 팀원들 간의 성차별 및 성희롱
 - 팀원들 간의 인권침해 (욕설, 차별 발언, 외국인 차별 등)
 - 강의 중 성평등 의식을 해하는 발언 및 행동
 - 수강생이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당사자로 지목되어 수업 분리가 필요한 경우

강의계획서 안내문 예시 :

OO대학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칙 OO) 해당 강의 중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거나 성평등을 해하는 언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교수 혹은 학내 담당자가 개인 면담을 요청하거나 학생의 수업 참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문의가 있다면 000 (전화 : 123-123-1234, 이메일 : abc@abc.ac.kr)로 연락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나.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미리 안내하기

- 강의 중에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야 하거나, 일부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할 때는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각종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가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업 내용과 수업 방향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거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음
-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의 예시
 - 학내외에서 실제 발생하였던 사건
 - 성희롱, 성폭력, 데이트 폭력
 - 범죄 및 범죄 피해
 - 학대 및 가정 폭력
 -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등
 - 기타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제들
- 다양한 학문과 강의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함. 다만, 사전에 학생들이 강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여 심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학생들이 강의 중 상호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지시켜줄 수 있음

안내 상황 예시 :

“강의 계획서에 설명된 것처럼, 다음 주에는 000에 대해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강의 중에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수업에 참여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임하고, 혹시나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저에게 따로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의 0주 차, 0주 차에는 000와 관련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강의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 주제를 다룰 때 학생분들은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과 및 대학 차원의 예방



가. 예방 교육 및 예방 워크숍

- 현재 상당수의 학교에서 단과대학 단위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교육도 정보전달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학생들과 해당 학과의 직원 및 교수들이 중심이 되는 소규모 단위의 예방 교육과 워크숍 또한 권장됨
- 예방 교육 및 예방 워크숍 예시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
 - 학생회 조직 직후 학생회 대상 토론식 교육
 - 학교 축제 이전 학과 대상 토론식 및 강의식 교육
 - 학내 동아리 단위의 토론식 및 강의식 교육
- 일부 학교에서는 실무자가 예방교육 및 토론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외부 강사 등을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학내 담당 부서의 추천을 받거나 다른 학과 및 학교의 추천을 받아 대학 실정을 이해하고 있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음
 - 시기에 따라 정부(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무료로 강의를 지원해주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공문을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음

예방교육 및 예방워크숍 실시하는 방법 :

1. 학내 성평등상담소, 양성평등상담소, 인권센터 및 학생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학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문의 한다.
2. 학과 및 대학 단위로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학교 담당자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분야의 교수 추천을 받아 검증된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한다.
3. 일부 학교의 경우, 수업 시간 중에 시간을 할애받아 특강 형식으로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나. 다른 학교 모범사례 도입하기

-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는 시기는 주로 학년 초와 축제 기간에 집중되어 있음
- 특정 행사에 적합한 효과성 있는 예방 정책을 학생들과 함께 구상하고 시행할 수 있음
- 학교 단위의 캠페인도 효과적이나, 학과 및 단과대학 단위로 학사 일정에 맞춘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임
- 주요 학사일정별 예방교육
 - **신입생 새터** : 학생회 대상 교육, 신입생 대상 교육, 인권 팔찌 및 음주 거절 스티커 등, 건강한 문화 지킴이
 - **축 제** : 인권존중 선서, 건강한 문화 지킴이

다른 학교 예시 :

- **학생회 대상 인권교육** : 학과 단위 학생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형식의 인권교육, 학과 내의 사업을 구상하며 우려되는 점들을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다루어보고, 향후 학과 내의 성평등 및 인권 교육 함양을 위한 논의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음
- **건강한 문화 지킴이 (모니터링)** : 학생의 일부가 자원하여, 학과 및 학과 행사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개입하도록 교육
- **인권 팔찌 (술 권유 거절 팔찌)/ 음주 거절 스티커** :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를 탈피하고, 음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신입생 새터 및 축제기간 모니터링** : 학과, 대학, 학교 차원으로 새터 및 축제 기간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 '처벌'을 위한 개입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존중 선서** : 인권존중을 주요 가치로 선포하고, 가치를 존중할 것을 선서할 수 있음

2장 대응 편 (학생 상담 주요 원칙)

이 장에서는 학생이 교수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학생이 찾아와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속한 학과나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교수님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직책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교수님에게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이나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교수들은 학생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지만, 자신이 학생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혹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하여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장에서 소개하는 기본 원칙들과 프로토콜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생의 의도를 파악하고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고민을 거듭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음
- 학생이 용기를 낸 준 것에 대하여 격려하고, 학생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수의 주된 역할임을 명심해야 함

권장하는 행동

- 용기를 격려해주기
- 학생은 교수가 사건을 해결해줄 것을 바라며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 상담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 조교 등의 3자가 배석 되지 않은 비밀 보장이 가능한 환경 조성
 - 교수연구실이나 상담실 등을 활용하여 이야기하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

피해야 하는 행동

-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에 상담과 만남을 피하기
 -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는, 상담하는 사람도 편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상담환경을 조성하고 상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기
 - 만약 상담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적합한 다른 사람(학내 담당자, 동료 교수 등)과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학생에게 사전 논의나 고지 없이 3자를 동석시키기
 - 제삼자의 동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학생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함

두 번째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에 있어서 교수님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 교수님의 역할은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임을 명확히 하고 받아들여야 함
- 최고의 해결 방안을 학생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학생이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 가장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임을 명심해야 함

권장하는 행동

-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 **안내 대화문 예시** :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교수로서 도와줄 수 있는 점에도 분명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 자신에게 상담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 **안내 대화문 예시** :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예요. 오늘 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건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000 학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건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000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피해야 하는 행동

- 피해자를 대신해서 동의 없이 학교부서나 경찰에 신고해주는 행동
- 피해자를 대신해서 해결방안을 정해주는 행동
-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모님이나 친구 및 학교에 알리는 행동
-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임의로 조사하는 행동

세 번째

교수님의 직책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직책과 책임을 다시 짚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본인의 직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을 학생에게도 알려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보직을 맡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권장하는 행동

- 본인의 신고 및 보고 의무 확인하기
 - **고려해야 할 내용** : 보직(학과장, 센터장, 부서장, 학교 각종 위원회 위원), 피해자와 나의 관계 (지도제자, 수강생, 학과 학생, 동아리 지도 학생 등)
- 본인의 직책과 이에 동반되는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기
- 본인이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 사정을 설명하고 적절한 사람에게 안내해 주기

피해야 하는 행동

- 직책을 이유로 충분한 설명 없이 상담을 거부하는 행동
- 직책이나 역할을 벗어나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행동
- 직책을 이용하여 사건 당사자들 (피해를 호소한 사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포함)에 임의로 사과나 화해를 권고하는 행동

네 번째

교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것은 학생이 적절한 도움을 찾고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함
- 역할과 직책으로 인하여, 사건을 공식화 해야 할 수도 있음 (학칙에 따라 학교 본부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 있음)
- 어떠한 직책이나 명분 없이 임의로 학생, 직원, 교수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교수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학교에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면 학교 측에 신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

권장하는 행동

-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담당기관을 안내하거나 직접 연계해 주기
- 대학 생활의 적응을 돕고, 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 예시 : 수업 분리 협조, 추가 상담 등

피해야 하는 행동

- 학생 대신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해 주기
 - 간혹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우려되는 마음에 사건을 피해자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음
 - 사건 조사를 위해선, 당사자의 신고와 당사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당사자에게 신고를 독려할 수는 있으나, 신고를 강제하거나 신고를 대신하는 행동은 피해야 함
- 통상적인 도움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 :
 - 피해자 대신 신고,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해자를 불러 혼내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가해자에게 권고, 피해자 동의 없이 사건을 공론화, 피해자 동의 없이 동료 교수에게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행위

다섯 번째

교수님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 신고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 학교 규정에 따라, 교수가 사건을 인지하게 될 경우 학내 부서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을 수도 있음
- 학생과 상담을 하기에 앞서, 본인의 신고 의무를 확인하여야 함

권장하는 행동

- 본인의 신고 및 보고 의무를 확인하기
 - **확인 방법** : 학칙 조회 및 담당 부서 문의
 - 사건에 대하여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할 수 있음
-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본인의 신고 및 보고 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기
-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없는 경우, 학생에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을 공식화하는 것이 아님을 안내하기
 - 사건을 공식화한다는 것은, 사건에 대하여 학교의 공식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임
 - 간혹, 교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학교가 개입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음
 - 학교의 공식적인 개입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에게 안내 해야 함

피해야 하는 행동

-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기
 -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부서 및 관련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함
 -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향후 사건의 진행양상에 따라서 사건을 축소하였거나 은폐하려고 하였다라는 의혹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하는 경우
-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있음 혹은 없음을 이유로 상담을 거부하는 행위
 - 상담의 목적이 반드시 신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함
 - 수업 분위기 개선이나 향후 재발 예방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여섯 번째

이야기를 들어주고,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 사건을 당장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건을 잘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향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상담의 주요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함
- 학생이 스스로 찾아온 이유는 사건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나 지혜를 얻고 싶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권장하는 행동

- 자신이 조언한 바와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해주기
- 사건 및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하기

피해야 하는 행동

-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 **확정적인 표현의 예시** : 그 정도라면 학교에서 쫓겨나야 해. 그 정도는 신고할 만한 일이 아니야. 내가 당장 불러서 다신 못하게 혼내줄게. 그렇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진술서를 쓰게 하기
- 학생을 꾸짖거나 잘잘못을 판단하려는 행동
 - 가끔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게 ~~ 했어야지”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건 그렇게 반응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함
 - 이러한 표현은 학생을 탓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학생은 자신이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음

일곱 번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세요.

-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사람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권장하는 행동

- 학내외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안내하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학내 담당 부서 (상담실, 성평등 상담소, 양성평등 상담소, 인권센터, 학생처 담당자 등), 경찰서 (112 전화 신고 및 민원실 방문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민원)
- 학생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학생이 혼자 방문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상담 도중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담소에 바로 연계해줄 수 있음

피해야 하는 행동

- 학내 신고나 경찰 신고를 만류하거나 의도적으로 안내하지 않기
 - 사건이 공식화되거나 소위 ‘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학내외에 신고하는 것을 만류하는 것은 피해야 함
 - 오히려,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여 학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바람직한 방안임
- 확실치 않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기
 - 실제 학칙이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일은 거의 오해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신고한다고 해도 별로 달라지는 일은 없을 거야”같은 자의적인 판단은 피해야 함



학생에게 안내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연락처를 사전에
정리하여 주세요.



학내 관련 부서 연락처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위치	

학교 관내 경찰서 담당 부서 연락처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위치	